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12,629,022	45,378,871
일반회계	1,331,111,605	39,933,348
특별회계	181,517,417	5,445,523
공기업특별회계	133,243,423	3,997,3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485,655	1,634,5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752,132	1,582,56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005,636	780,169
기타특별회계	48,273,994	1,448,220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818	55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95,529	80,866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49,659	103,490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	34,541,971	1,036,259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7,585,017	227,551

제 2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도 명시이월(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21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391,91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